

건설기계검사기준 (제27조관련)

1. 공통사항

- 가. 등록번호표 및 주요제원이 건설기계등록·검사증과 일치하고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봉인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, 등록번호 새김이 등록원부에 부착된 새김탁본과 동일할 것
- 나. 소화기는 사용이 편리한 곳에 비치되어 있을 것
- 다. 차체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외관도장이 되어 있을 것
- 라. 구조변경내용이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과 건설기계검사기준에 적합하고, 임의로 구조를 개조한 부분이 없을 것
- 마. 규격 등 제원을 실측하여 건설기계제원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(신규등록검사에 한한다)
- 바. 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는 명령을 받는 검사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할 것
- 사. 도로이동 시의 분해·운송방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(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신규등록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- 아.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또는 작업능력 증가를 위한 평형추 등의 개조 또는 추가 부착이 없을 것

2. 원동기

- 가. 원동기 형식이 건설기계검사증과 일치할 것
- 나. 원동기 성능
 - (1)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
 - (2) 원동기의 설치상태가 확실할 것
 - (3) 볼트·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
 - (4) 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한다.
 - (5)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기관·소음기·촉매장치 등의 손상·변형·부식 등이 없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것
- 다. 냉각장치
 - (1) 팬벨트 및 방열기 등의 손상이 없을 것
 - (2) 냉각수의 누출이 없을 것

라. 전기장치

- (1) 전기배선·단자·개폐기의 피복 및 설치상태가 양호할 것
- (2) 축전지의 접속·절연 및 설치상태가 양호하고 심하게 방전되어 있지 아닐 것

- (3) 점화·충전·시동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
마. 윤활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급유상태가 양호할 것

바. 연료공급장치의 작동상태가 원활하고 파이프·호스·연료펌프·분사기·기화기의 손상·변형 및 연료누출이 없을 것

사. 공기압축장치 등 부수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내압용기·파이프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 변형과 공기누출이 없을 것

아.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조속기(연료 분사량 조절기)의 봉인이 조작·훼손 또는 제거되어 있지 아닐 것

3. 하체부

가. 차 대

- (1) 만곡(굽음)·부식·균열·절단 등으로 인한 차대의 변형이 없을 것
- (2) 완충장치는 좌·우가 균형을 유지하고 균열·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이 없을 것

나. 전동장치

- (1) 클러치페달의 유격 및 페달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
- (2) 클러치페달을 조작하여 이상음이 없고 작동상태가 확실할 것
- (3) 볼트·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
- (4) 토크컨버터는 기름량이 적정하고 누출이 없을 것
- (5) 벨트·체인·로프 등이 양호할 것

다. 제동장치

(1) 제동력

(가) 검사소 입고검사

- 1) 조향축의 제동력은 운전중량 상태에서 해당 축하중의 50퍼센트 이상이고, 그 외의 제동력은 해당 축하중의 20퍼센트 이상이며,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은 50퍼센트 이상일 것
- 2) 동일차축의 좌·우바퀴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하중의 8퍼센트 이내일 것
- 3) 주차제동력의 합은 건설기계 빈차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
- 4) 제동드럼,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는 심한 마모·균열·변형이 없어야 하며, 기름의 누출이 없을 것

(나) 현장검사

- 1)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일정거리를 주행시켜 제동시 즉시 정지하고 좌·우바퀴의 제동상태(끌림·정지거리·제동흔 등)에 현저한 차이가 없을 것
- 2) 주차제동장치는 빈차상태에서 조종사 1인이 탑승하여 경사지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제동체결 상태에서 변속단은 최저감속으로 발진하여 바퀴의 끌림 및 원동기 정지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
- (2) 제동호스와 파이프는 균열·손상 및 마멸된 부위가 없어야 하며, 공기 또는 기름이 누출되지 아니할 것
- (3) 제동력 복원 상태가 양호할 것
- (4) 제동페달 및 레버의 유격은 페달과 상판과의 간격이 적정할 것
- (5) 제동레버는 당김량이 적정할 것

라. 변속장치

- (1) 클러치·변속기·추진축 및 연결부의 손상 변형과 기름누출이 없을 것
- (2) 변속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고 조작이 원활할 것

마. 조향장치

- (1) 좌·우 동심원으로 선회할 것
- (2) 조향핸들은 회전각도와 조향각도 및 좌·우 조향력에 심한 차이가 없을 것
- (3) 조향핸들은 흔들림이 없고 작동시의 유격은 조향핸들 직경의 12.5퍼센트 이내일 것
- (4) 조향바퀴의 옆 미끄럼량
 - (가) 검사소 입고검사 : 1미터 주행에 5밀리미터이내일 것
 - (나) 현장검사 : 타이어가 편마모되지 아니할 것
- (5) 리닝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- (6) 조향브레이크, 조향클러치, 차체굴절식 조향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- (7) 타이로드·앤드·드래그링크·피트먼암·기어박스·파워실린더·너클등은 변형·느슨함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

바.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 장치

- (1) 배기관 소음기의 변형 및 배기계통에서의 배기가스 누출이 없을 것
- (2) 덤프트럭·콘크리트믹서트럭·콘크리트펌프트럭의 배기관 개구방향은 후향으로서 하향 30도 좌향 30도이내일 것
- (3) 배기소음은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
- (4) 차체의 가연성 부분이 배기관과 접촉하지 아니할 것

사. 주행장치

- (1) 트럭·롤러·스프로킷트·프레임 레일 가이드는 심한 마모와 변형이 없을 것

- (2) 무한케도의 긴장도는 좌우가 동일할 것
- (3) 차축의 외관 및 휠은 균열이 없고, 볼트·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
- (4) 타이어는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로 손상이 없고 요철의 깊이가 1.6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기압력이 적정할 것
- (5)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향륜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
- (6) 규격미달 타이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

아. 점등 및 조명장치

- (1) 전조등·미등·측등·계기반등·후퇴등·실내등·차폭등·등화관제등·번호등·방향지시등·제동등·발판등·작업등·속도표시등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 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할 것
- (2) 입고검사 건설기계의 전조등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
 - 1) 광 도
 - 2등식 : 15,000칸델라이상일 것
 - 4등식 : 12,000칸델라이상일 것
 - 2) 광축과 진폭
 - 10미터 위치에서 다음 수치이내일 것

(단위 : CM)

구 분	상	하	좌	우
좌 측	1 0	3 0	1 5	3 0
우 측	1 0	3 0	3 0	3 0

자. 계기장치

- (1) 시간계·전류계·온도계·속도계·연료계·유압계·회전계·압력계등 설치된 계기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- (2) 속도계는 지시오차 ± 15 퍼센트, -10 퍼센트이내일 것
- (3) 전기단자·개폐기 및 배선은 적절히 피복되어 있고 자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을 것

차. 기타 장치

- (1) 경음기 및 경보장치의 음의 크기는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의 범위이내일 것
- (2) 연결장치
 - (가) 연결장치는 변형·손상이 없고, 견고하게 연결되어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할 것
 - (나) 연결장치의 안전잠금장치는 2개 이상 갖추어야 하며, 풀림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가 피견인장치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할 것

(3) 안전표지등

(가) 안전과 관계되는 레버는 식별이 쉬운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

(나) 굴착기·기중기 등 선회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후면에는 “작업반경내 접근금지” 표시가 되어 있을 것

(4) 속도표시장치·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

덤프트럭,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속도표시장치·속도제한장치 및 운행기록계(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)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
4. 차 체

가. 적재함등

(1) 적재함은 상승·하강·정지 작용이 원활하고 호이스트에서 기름의 누출이 없어야 하며, 적재함이 상승된 상태에서는 경고등 또는 경고음이 작동할 것

(2) 적재함 바닥면의 부식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

(3) 적재량의 증가를 위한 적재함의 개조가 없을 것

(4) 개폐식 문짝의 안전잠금장치가 견고할 것

(5) 최대적재중량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적재중량은 건설기계검사에서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할 것

(6) 측면보호대 및 후면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을 것

나. 조종장치등

(1) 조종석은 운전 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, 타이어식 건설기계(시간당 30킬로미터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건설기계에 한한다)는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을 것

(2) 창문유리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파손 및 균열이 없을 것

(3) 후사경은 좌·우 및 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

(4) 조종실내에서 운행중 시야를 가리는 부착물이 없을 것

(5) 창닫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 기능이 양호할 것

다. 유압장치

(1) 유압펌프와 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

(2) 유압실린더는 변형이 없고 기름누출이 없을 것

(3) 유압호스·파이프·밸브·탱크등 연결부는 균열·손상 및 마멸이 없고 기름 누출이 없을 것

(4) 붐(boom) 등은 조작레버의 각 위치에 있어서 작동이 확실하고 상승위치

에서 자연하강하지 아니할 것

라. 상부 선회장치

- (1) 선회모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여야 하고 회전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으며 선회속도가 적정할 것
- (2) 턴테이블, 선회기어등의 볼트·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
- (3) 선회 제동장치는 선회상태에서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

5. 작업장치

가. 불도저, 모터그레이더의 배토판(排土板: 불도저 따위의 앞부분에 부착하여 지면을 고르거나 미는 등에 사용하는 금속제 판)

- (1) 배토판등은 틸트, 상하좌우의 이동 및 회전작용이 원활하고 균열과 심한 변형이 없을 것
- (2) 삽날·귀삽날등은 심한 마멸과 변형이 없을 것
- (3) 푸시암과 부착축의 균열이 없고 볼트 및 너트가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을 것

나. 굴착기, 로더의 버킷등

- (1) 버킷은 균열·마모와 심한 변형이 없을 것
- (2) 귀삽날·이빨의 손상·폴림이 없을 것
- (3) 붐·암등의 변형·손상이 없을 것

다. 기중기의 붐 등

- (1) 붐의 만곡·균열·손상·부식 등으로 인한 변형이 없을 것
- (2) 기복장치는 붐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조종사의 조작에 의하여만 작동될 것
- (3) 로프의 절단·마모는 규정치이내이어야 하며, 꼬임·끼임·파손·부식 등이 없고 적절하게 윤활되어 있을 것

(단위 : %)

구 분	소선수의 절단	공칭경의 마모
규 정 치	10(이내)	7(이내)

- (4) 훅 및 시브는 파손·균열등의 변형이 없고 로프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보호장치가 있을 것
- (5) 삭제 <2023. 7. 19.>
- (6) 조종사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
- (7) 과부하 경보장치등 설치된 경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
라. 쇄석기등

- (1) 조·롤·자이레토리콘·임팩트밀·해머등이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과 이상음이 없을 것
- (2) 호퍼는 부식등의 변형이 없을 것
- (3) 선별기의 스크린 및 진동장치는 골재를 소정의 크기별로 선별할 수 있을 것
- (4) 컨베이어·피더는 정상작동되어 원석을 일정한 비율로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
- (5) 볼트·너트의 체결상태가 견고할 것

마. 스크레이퍼등의 운반기능

- (1) 콘베이어·버킷·벨트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- (2) 에이프런의 개폐와 이젝터의 전진·후퇴 및 볼의 상하 작용이 확실할 것

바. 지게차등의 적화장치

- (1) 마스트의 딜트 작용과 쇠스랑의 상승·하강작용이 원활하고 급속하강을 방지할 수 있을 것
- (2) 체인은 손상이 없고 좌·우 장력이 같아야 하며 베어링·축등은 마모로 인한 심한 흔들림이 없을 것
- (3) 핑거보드는 휨·균열이 없고 적당량의 그리스가 발라져 있을 것

사. 공기압축기등

- (1) 압축장치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 시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을 것
- (2) 공기탱크는 언로우더 밸브와 안전변이 작동되고 설치상태가 견고하며 변형이 없을 것
- (3) 호스·파이프·밸브등 연결부는 균열·손상 및 공기누출이 없을 것

아. 롤러등

- (1) 롤·롤 돌기부는 부식·마모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을 것
- (2) 타이어 동요장치의 잠금은 운전석에서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
- (3) 기진기는 작동상태가 양호하고 차체와 바퀴사이에 방진장치가 있을 것
- (4) 살수장치가 정상 작동될 것
- (5) 다짐 압력은 밸러스트에 의해 가감될 수 있을 것

자. 콘크리트 기계류

- (1) 배칭플랜트의 계량장치는 재료공급장치와 연관작동되고 정밀도가 유지될 것
- (2) 믹서드럼은 부식 및 손상으로 인한 심한 변형이 없고 스프로킷 체인등 구동장치는 안전덮개가 있을 것
- (3) 피니셔, 살포기등의 스크류컨베이어, 피니싱 스크리드, 블레이드는 부식

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원활하게 작동될 것

(4) 피니셔의 기진기는 강력한 진동과 압력으로 다짐작업을 할 수 있을 것

(5) 믹서트럭의 드럼은 회전방향과 회전수를 조종석과 외부에 설치된 조정레버 등으로 조종할 수 있을 것

(6) 슈트의 잠금장치는 확실히 고정되어 주행중 충격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

(7) 배송장치는 작동상태에서 심한 진동이나 이상음이 없어야 하며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을 것

(8) 펌프호퍼내의 교반장치는 자동반전 및 복귀가 될 것

(9) 수송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연결되어 누설되지 않을 것

(10) 원격조종장치는 상태가 양호할 것

(11) 탱크·파이프·호스 등 급수장치는 누설되지 않을 것

(12) 콘크리트믹서트럭의 배송장치 하부에는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, 동 장치에는 상하좌우로 작동이 원활한 유입시설이 있을 것

차. 아스팔트기계류

(1) 믹싱플랜트의 골재공급장치는 공급량을 가감할 수 있고 계량장치는 정밀도가 유지될 것

(2) 믹서 내면은 라이너 등이 설치되어 있고 아스팔트 공급 파이프라인은 보온되는 구조일 것

(3) 집진기는 배출되는 먼지 등을 회수할 수 있을 것

(4) 피니셔의 스프레더·탬퍼·스크리드·콘베이어는 부식 및 손상에 의한 변형이 없고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
(5) 버너·히터 등 가열장치는 작동상태가 양호하며 화재방지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

카. 향타기 등

(1) 디젤해머·진동해머 등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
(2) 원치·로프·가이드·시브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

타. 천공기 등

(1) 드리프트·착암기의 지지뿔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을 것

(2) 크롤러 구동 공기모터는 좌우를 각각 독립하여 구동할 수 있을 것

(3) 드릴·가이드·로프·시브·원치·오거 등의 상태가 양호할 것

(4) 호스·파이프·밸브 등 연결부는 균열·손상과 공기 및 기름누출이 없을 것

파.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

(1) 컨베이어의 버킷 등은 균열·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고,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
- (2) 준설펌프의 설치상태 및 흡입·배출 파이프의 연결상태가 견고하여 준설펌프의 누출이 없을 것
- (3) 래더 및 커터는 설치상태가 견고하고, 균열·마모 및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,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
- (4) 로프는 감김 및 풀림작용이 원활하여야 하고, 그레브 또는 해머의 낙하충격이 선체에 미치지 아니할 것
- (5) 승선인원에 합당한 구난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- (6) 전도사고 시 기름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「선박안전법」에 따른 선박기관기준에 적합한 공기관(에어벤트)이 설치되어 있을 것

하. 타워크레인

(1) 구조

- (가) 마스트, 지브(jib), 선회장치, 구조물 및 각종 기계장치는 비틀림, 굴곡, 휨, 부식, 균열 및 용접결함이 없고, 연결부 및 볼트체결 부위에는 유격이 없을 것
- (나) 기초 바닥면은 현저한 깨짐이나 부등침하 등이 없을 것
- (다) 클라이밍(Climbing) 또는 텔레스코픽(Telescopic) 장치는 안전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유압계통의 오일 누설이 없을 것

(2) 기계장치

- (가) 각 주행전동기, 감속기, 체인, 벨트, 구동축, 지지부의 연결고리, 로프록크 연결볼트 및 구동축연결 커플링은 견고히 체결되어 풀림이 없을 것
- (나) 각 전동기, 동력전달장치 및 트롤리 레일 및 롤러, 주행차륜(이동식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드럼 등의 이상음, 이상발열, 균열, 변형, 손상, 마모 등이 없을 것
- (다) 레일의 양 끝부분에는 완충장치 및 이동한계 스위치 등의 정지장치가 정상작동 될 것

(3) 도르래 및 훅(hook)

- (가) 도르래 본체 및 로프 이탈방지장치는 균열, 변형 등이 없고, 도르래 홈의 마모량은 로프 직경의 20퍼센트 이내일 것
- (나) 압, 보스부, 베어링 및 핀은 균열, 변형 및 마모가 없고, 발열방지 및 마모방지를 위하여 윤활되어 있을 것
- (다) 훅 본체는 균열, 변형 등이 없고 정격하중이 표기되어 있을 것

(4) 와이어로프

- (가) 달기기구 및 지브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와이어로프는 드럼에 최소 2바퀴 이상 감겨 있을 것

(나) 클립간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고정을 하는 경우 클립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

직경(mm)	16 미만	16 ~ 28	28 초과
클립수	4개	5개	6개 이상

(다) 와이어로프의 소선절단수는 한핏치내의 소선수의 10퍼센트 미만이고 마모율은 호칭지름의 7퍼센트 이내이며 킹크가 없을 것

(5) 각종 이름판은 손상이 없고 조정실에는 지브길이별 정격하중 표시판 (Load Chart)을 부착하고, 지브에는 조종사가 잘 보이는 곳에 구간별 정격하중 및 거리표지판을 부착할 것. 다만 거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가 조정실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(6) 전기관계

(가) 각종 전기장치의 배선은 접촉단자 체결나사의 풀림, 탈락, 손상, 열화 등이 없어야 하며 전선인입구 피복의 손상 및 열화가 없을 것

(나) 각종 전기장치는 접지되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절연저항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

대지전압	150V 이하	150V 초과 ~ 300V 이하	300V 초과 ~ 400V 미만	400V 이상
절연저항	0.1MΩ 이상	0.2MΩ 이상	0.3MΩ 이상	0.4MΩ 이상

(다) 전자접촉기, 과전류 보호기, 결상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

(라) 제어반에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또는 퓨즈가 설치되어 있고, 그 차단용량이 해당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에 대하여 차단기는 250퍼센트, 퓨즈는 300퍼센트 이하일 것

(마) 콘트롤러는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하며 핸들은 정지위치에 정확하게 록크되고 작동방향의 표시판은 손상이 없고 표시가 선명할 것

(바) 전동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발열이 없을 것

(7) 각종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것으로 교체할 것

(가) 브러시는 이상마모가 없어야 하며, 마모한도는 원치수의 50퍼센트 이하일 것

(8) 지면에서 60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 「공항시설법」 제36조에 따른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할 것.

(9) 설치된 이후에 검사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지브 등 고소(高所)에 위치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지상에서 실시한 검사내용을 인정할 수 있되, 수검자는 검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(1)의(가)에 따른 부식, 균열 등에

대한 맨눈검사 또는 비파괴검사 결과를 제시할 것

(10) 방호장치

(가) 권과방지장치(와이어로프 과다 말림 방지 장치), 과부하방지장치, 회전 부분방호장치, 혹 해지장치, 미끄럼방지장치, 경사각지지장치,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

(나) 하중시험은 정격하중의 1.05배 미만의 하중으로 한다. 다만 검사시의 하중시험은 지부외측단에서 적용기로 하고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 등의 균열,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.

(다) 동작시험은 나항에서 규정한 하중을 매달고 일정속도로 운전할 때 운전 동작(권상, 횡행, 주행 등)이 원활하고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되어야 하며 브레이크는 확실하고 이상음 또는 이상진동이 없을 것

(11) 자립고(free standing)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25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
(12) 그 밖의 사항

(가) 검사 시 부품의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해체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,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(나) 검사에 필요한 시험용 하중은 수검자가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(다) 검사 시 타워크레인의 설계도서 또는 건설기계기술사, 건축구조기술사, 토목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(라)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·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앵커 제작증명서,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측정한 결과서와 그 측정 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.

(마)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(바) 검사 시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,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, 신규등록 이후 이동설치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마스트의 볼트, 핀 체결상태를 확인할 것

(사) 검사 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를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확인할 것

(아)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1) ~ 3)까지의 부품에 대해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. 다만,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

제외한다.

1)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

2)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

3) 클라이밍(Climbing) 및 텔레스코픽(Telescopic) 장치의 각 부분

(자)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검사할 것

6. 기타 사항

가.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것

나. 「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」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을 것

다. 자갈채취기 및 준설선은 「선박안전법」 제60조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「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안전도 검사가 되어 있을 것

라. 운전정지로 인하여 건설공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

마. 제4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주행장치를 탈거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건설기계는 주행장치를 탈거한 상태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.